

의안 설명서

[제 1 호 의안] 제 4 기(2020.01.01 ~ 2020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(현금배당 1 주당 320 원 승인 포함)

상법 제 449 조 및 당사 정관 제 42 조에 의거하여 제 4 기(2020.01.01 ~ 2020.12.31)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※ 제 4 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「Ⅲ. 경영참고사항」 중 “2.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 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 및 회사 홈페이지(<http://www.ubiquoss.com>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당관련사항 : 현금배당 1 주당 320 원, 배당금 총액 3,277,920,640 원

[제 2 호 의안]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상법 제 433 조 및 제 434 조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정관 변경(안)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 9 조의 2 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제 9 조의 2 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	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
제 38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 <신설>	제 38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 ⑤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u> ⑥ <u>제5항·제6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	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(상법 제 542 조의 12)

<p><신설></p>	<p>제 38 조의 2(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) ① 제 38 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	<p>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의 분리선임·해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(상법 제 542 조의 12)</p>
<p><부칙></p>	<p>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제 2 조(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 38 조 제 4 항·제 6 항 및 제 38 조의 2 제 1 항의 개정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·제 4 항 및 제 8 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. 제 3 조(감사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) 제 38 조 제 5 항·제 6 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3 항·제 4 항 및 제 7 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</p>	

[제 3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의 분리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이사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
윤기봉	1957.01	사외이사	3 년	재선임	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졸업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기아자동차 경영분석팀장, 재경사업부장, 중국사업부장

(*)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 후 재선임하는 방식으로 분리 선임

[제 4 호 의안]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상법 제 542 조의 12 및 당사 정관 제 38 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2 명의 선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감사위원 선임 후보자

성명	출생연월	구분	임기	신규선임여부	주요경력
박기호	1969.08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2 년	재선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세종대학교 조교수/부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교수
이효종	1956.08	사외이사인 감사위원	2 년	신규선임	<input type="checkbox"/> 한양대학교 재료공학 석사, University of Pittsburgh MBA <input type="checkbox"/> (前) 삼성전자, 삼성 SDS <input type="checkbox"/> (現) 엘씨스퀘어 대표이사

[제 5 호 의안]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제 36 조에 의거하여 제 5 기(2021.01.01 ~ 2021.12.31) 중 이사에게 지급할 연간 보수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승인 받고자 본 의안을 상정합니다.

◎ 전기(제 4 기) 이사보수 지급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	보수지급액
제 4 기 (2020 년)	6 (3)	2,000,000,000 원	733,358,778 원

◎ 당기(제 5 기) 이사보수 한도액

구 분	이사총수 (사외이사수)	보수한도액
제 5 기 (2021 년)	6 (3)	2,000,000,000 원